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52호

「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## 강릉시 의회 의장

#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지원사업(안 제5조)
- 다. 예산의 지원(안 제6조)
- 라. 비밀누설 금지(안 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#### 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25dead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##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자립준비청년”이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3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4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
5. 신체적·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

6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7.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예산의 지원)**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비밀누설 금지)**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